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8. 9 선고 2024가단8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김형규

변 론 종 결 2024. 7. 19.

판 결 선 고 2024. 8. 9.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831, 2016고단227, 2017고단224 형사사건(원고가 피고인)을 수임하여 변호하였다.

나. 원고는 구금 중이던 2018. 6. 20. 피고에게 ‘성공보수금 등 수임료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2018. 9. 28. C단체에 진정을 하였다. C단체는 2018. 12. 19. 이 진정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구금 중이던 2019. 11.경 피고에게 다시 ‘다음 주 21일 목요일 출소하는데 성공보수금 등 수임료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게 ‘출소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들려주시면 A씨 편지 내용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출소하면 연락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2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여 주는 한편,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본인 A은 금일 B 변호사와 모든 건에 대하여 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오늘 이후로 어떠한 민·형사 행정등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마. 원고는 2019. 12. 10. 서천경찰서에 피고를 상대로 수임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2020. 1. 15. C단체에 다시 진정을 하였다.

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020. 5. 14. 피고에 대한 사기·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C단체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20고단218, 239(병합))에서 피고에 대한 공갈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원고는 2024.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831 사건(소위 D 사건)에 관해 지급한 1,500만 원, 2017고단224 사건(소위 E 사건)에 관해 지급한 800만 원, 2017고단347 사건(소위 F 사건)1)에 관해 원고가 F를 대신해 지급한 1,000만 원의 합계 3,300만 원은 무죄 또는 법정구속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성공하지 않았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이들 사건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수임료 반환을 독촉하다가 C단체에 진정까지 하였지만 그 진정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 가량 뒤 다시 피고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청하고 피고를 만난 점, ② 원고가 출소 즉시 피고를 만나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점, ③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피고와 관련한 모든 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민사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원·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와 작성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청한 사건들에 관한 모든 분쟁대상을 포괄하여 원·피고가 합의함으로써 향후 더 이상의 법적 쟁송을 차단하기로 하는 의사가 담겨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부제소 합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관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고가 아니다.